

	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지원 규정	제 정 일	2021.12. 1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국제협력센터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‘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문업무처리요령’ 및 법무부 ‘출입국관리법’에 근거하여 외국인유학생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 유학생 :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(이하 “유학생”이라 한다.)
2. 외국인 교환·방문학생 : 본교와 외국대학교간의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 협정에 의하여 교환되어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(이하 “교환학생”이라 한다.)
3. 외국인 연수생 : 국제협력센터의 입학허가를 얻어 어학연수 또는 단기연수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(이하 “연수생”이라 한다.)

제 3조 (적용범위) 본 규칙은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.

1. 유학생 및 교환학생의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한다.
2. 연수생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2 장 유학생 입학자격 및 주관부서

제 4조 (입학자격) ①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.

1. 고등학교졸업(졸업예정) 이상의 학력소유자 또는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, 기타 법령에 의해 대학입학능력이 인정된 자
 2.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,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
 3. 당해 모집요강에 기재된 지원 자격을 갖춘 자
- ② 교환학생의 경우 본교와 교류대학간 협약에 따른다.
 ③ 어학 및 단기 연수과정에 지원하는 연수생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5조 (입학주관부서) 유학생,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유학생 선발 부서 : 입학홍보처 입학홍보과 및 국제협력센터
2. 교환학생 선발 부서 : 국제협력센터
3. 연수생 선발 부서 : 국제협력센터

제 6조 (관리주관 및 지원부서) ① 유학생, 교환학생 및 연수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한다.

1. 유학생 관리주관부서 : 국제협력센터

2. 교환학생 관리주관부서 : 국제협력센터
3. 연수생 관리주관부서 : 국제협력센터
- ② 유학생, 교환학생 및 연수생의 관리 주관부서의 담당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외국인 학생의 본교 입학, 생활, 안전, 상담 및 출입국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
 2. 외국인 학생 모집 및 홍보 지원
 3. 전 항의 관리 주관부서는 외국인 학생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지도 권한을 가지며,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을 진다.

제 3 장 유학생 관리

- 제 7조 (학사) 외국인 학생의 수업, 성적, 학적 등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제 8조 (등록금 및 장학금) ① 입학이 허가된 유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② 유학생은 본교 장학규정에 따라 외국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급수 및 직전학기 성적 등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
- 제 9조 (입국지도) 국제협력센터는 표준입학허가서와 입국관련 자료 등을 입학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학생에게 발송한다.
- 제10조 (학생상담) 유학생들의 적응 및 학업지도에 관하여서는 소속 학과 및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지원하며, 본교 학생생활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.
- 제11조 (유학생활동 지원) 국제협력센터는 유학생 활동 및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제 4 장 유학생 출입국 및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

- 제12조 (정담당자 지정)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의 정담당자는 외국인 학생 관리주관부서 소속 직원으로 한다.
- 제13조 (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) ①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국제협력센터 소속 직원으로 한다.
 ② 전 항의 출입국 자료 관리 담당자는 제12조의 정담당자에게 출입국 업무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- 제14조 (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) 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센터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.
- 제15조 (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 통보) 제12조의 정담당자는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외국인 학생 및 연수생 현황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한다.
- 제16조 (변동신고) 제12조의 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한 이내에 유학생 정보시스템 매뉴얼에 기초하여 변동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.
 1.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휴학을 한 경우
 2. 재적·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경우
 3.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

4. 졸업이나 수료를 한 경우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5 장 생활 및 안전관리

제17조 (상해보험) 유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.

제18조 (기타보험) 유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국민건강보험 또는 본교에서 지정한 유학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제19조 (의료지원) 유학생은 간단한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학생처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다.

제20조 (위기관리) 외국인 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교의 학칙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강제 출국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부서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 타

제21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유학생 정보시스템 시행 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